



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주택건설사업 제도운영 조치사항 안내(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, 2021-01)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부는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「**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**」(과기정통부·산업부·국토부 공동 고시)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* 담당부서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(네트워크안전기획과, 044-202-6434), 산업통상자원부(전자전기과, 044-203-4267), 국토교통부(주택건설공급과, 044-201-3373)

3. 다만, 최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**설치·기술 기준의 해석·적용, 건축심의 및 감리의 전문성, 유지·보수의 지속성**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동주택 세대 내 조명·난방·가스 등 여러 장치를 연결하여 제어·통신할 수 있는 설비는 일반적으로 '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'에 해당하므로,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「**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**」을 **적용**하여야 합니다(과기정통부·산업부·국토부).

*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283, 서울고등법원 2020누42271

사업시행계획 신청 시 분양 계약서·공고문 등에 '지능형 홈네트워크'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거나, 그 설치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

나. 주택사업계획 승인 관련 각종 건축 심의를 위한 **위원회 등***에 **정보통신 전문가를 포함**하여 주시기 바라며, 사업계획승인 시 귀 기관의 **주택사업 담당 부서와 정보통신 담당 부서가 상호 협조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국토부·과기정통부).

* (예) 건축위원회, 건축민원전문위원회, 건축계획·건축구조·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

다. 주택감리 시 「주택법」 제45조에 따라 「**정보통신공사업법**」 제8조에 따른 감리와 **적극 협력**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국토부·과기정통부).

라.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-7808(2020.12.4.) 관련, 보안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**보안패치, 악성코드 제거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반영**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도·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국토부·과기정통부).

4. 아울러, 각 시·도에서는 **관할 시·군·구 및 산하 공공기관, 관련 기관·단체에 위 사항을 전파하고 지도·감독하여**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사본(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-7808, 2020.12.4.)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수신자 서울특별시장, 부산광역시장, 대구광역시장, 인천광역시장, 광주광역시장, 대전광역시장, 울산광역시장, 세종특별자치시장, 경기도지사, 강원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(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), 정보통신감리협회장, 정보통신기술사회장,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전자전기과장), 건축정책과장, 대한건축사협회, 정보보호담당관,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, 한국주택협회장, 대한주택건설협회_중앙회,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주무관 **이은일** 시설사무관 **김준** 주택건설공급과장 **김경현** 전결 2021. 7. 19.

협조자 시설사무관 **육인수**

시행 주택건설공급과-3984 (2021. 7. 19.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국토교통부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3373 팩스번호 044-201-5684 / leeunyle@molit.go.kr / 비공개(5)